

2023년 도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3. 11. 28.(화), 11:00 ~ 12: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1층)
- ▣ 출석위원 : 김창준(위원장), 장석하(부위원장), 박기화, 이광우, 이승희, 장경희, 최영식, 홍승재, 남효대, 최종덕, 진혜영, 양은경, 백종오, 김기수, 김사덕, 권기혁, 백민호, 도진영, 도인수
(이상 19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수 리 기 술 위 원 회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 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관련된 내용과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 의결방식, 제8조 제척신청 등의 처리, 제10조 회의록 공개 및 관리에 관련된 내용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라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자문 등을 한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고,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합니다.
2. 또한 회의내용은 기록·녹취가 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6 및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1	제3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심 의 사 항】

안건번호 (전체회의) (2023)-(1차)-(001)

1. 제3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가. 제안사항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인 '제3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24~'28)을 수립하고자 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정책의 향후 추진방향과 구체적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계획안에 대한 수리기술위원회의 검토 후 계획을 시행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개년 기본계획수립의 적정성 검토
- 계획의 성격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한 법정계획
 - 국가유산수리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중장기에 걸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종합계획
 -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의 기준 및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4~2028년
 - 내용적 범위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기본계획, 자연유산 기본계획과 연계하고, 다음 내용을 포함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본방향
 - 국가유산수리 등의 품질확보 대책
 - 국가유산수리 등의 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필요한 사항
- 제3차 기본계획 비전 : 지속가능한 국가유산수리정책 구현
- 정책목표 : 국가유산의 가치유지와 회복, 국가유산수리의 진흥, 수리현장의 공감과 신뢰 향상
- 추진체계 : 3대정책목표 - 9개 전략과제 - 18개 세부과제

라. 검토의견 (수리기술과)

- 제2차 기본계획이 곧 만료됨에 따라 2022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음(수행업체 :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국가유산체제 전환 등) 및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 등을 반영하고, 담당자 업무협의, 시도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도출하였음.
- 5개년 기본계획안의 비전, 정책방향, 정책목표, 전략과제, 추진방안의 연계성과 적정성 및 실천 가능성에 대한 최종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전통건조물의 수리뿐 아니라 근현대문화유산·동산문화유산의 수리에 필요한 기술연구, 재료생산 등에 대한 계획과 재난·안전에 관한 내용 보완 바람
 - 계획추진에 필요한 조직, 로드맵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 제시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9명 / 조건부가결 19명